

1963년도 全國公共圖書館大會 會議錄



第1日 (9月 16日)

開會式 10.00~11.00

1. 開會宣言
2. 國民儀禮
3. 開會辭～韓國圖書館協會長 閔泳珪
4. 來賓祝辭
文教部長官 祝辭 (文藝局長 李喆熙
氏 代讀)
- 仁川市長 祝辭 (市教育課長 李康敏
氏 代讀)
- 藝總 京畿道支部長 韓相億氏
5. 經過報告～圖協幹事 成宅慶氏
6. 議事進行日程 呂 公知事項 廣告
7. 休會 10分間
8. 大會議長 選出
서울特別市立 南大門圖書館長 崔昌
均氏를 選出하다.

9. 議長 當選人事

10. 閉會宣言

議題發表

a) 11.00~11.50

公共圖書館의 職制確立와 豫算, 呂 司
書職의 教育, 養成 待遇 問題(原稿別添)

發表者 張仁植(仁川市立圖書館長)

12.00~13.00……中食

b) 13.00~13.50

公共圖書館施設의 現代化와 藏書問題
(原稿別添)

發表者 金憲洙(大邱市立圖書館長)

c) 14.00~14.50

先進國 公共圖書館에 대한 考察(原稿
別添)

發表者 朴昌圭(國學大學圖書館司書)

d) 15.00~15.50

圖書館法의 制定과 郡單位 圖書館의 設置 研究(原稿別添)

發表者 金鍾文(釜山市立圖書館長)

○ 16.00~16.50

仁川市立圖書館 現況 說明 및 運營
狀況 視察

○ 17.00~18.30

仁川市長이 배포는 간단한 酒菓宴
에 全員이 參席하다.

○ 18.30……第1日 日程終了

第2日 (9月 17日)

臨時議長 選出 10.00~10.10

會議 繼開를 宣言하고 臨時議長 選出에 들어가다.

崔昌均 議長의 參席이 自館의 急務
로 不得已 늦어지겠다는 通告에 따라
臨時議長 選出에 들어간바 仁川市立
圖書館의 張仁植館長이 滿場一致로
被選되어 會議를 進行하다. 會議途中
에 正議長이 入場하였으나 固辭로 張
館長이 正議長이 되다.

e) 11.00~15.30

討論事項

議長~자금으로부터 오늘의 豫定表에 따
라 討議事項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1. 公共圖書館 運營奉仕 問題

- 가) 閲覽時間과 定例 休館日의 調節
- 나) 閲覽料 徵收制度의 撤廢
- 다) 特別手當의 支給 問題

2. 利用者의 道德 良識의 善導策

3. 文教部, 市道 및 市郡 機構內에 圖 書館管理 指導部署의 設置 問題 等 세 가지 議題를 가지고 次例로 한 가지씩 討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以上의 問題를 討議하기 前에
追加해서 討議하고 싶은 案件이 있으시
면 이 기회에 提案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文(釜山)~討議事項 및 建議事項이 決
議되면 文教部에 建議書를 提出하도록
되어 있읍니까.

張議長~오늘 討議하여 決議되는 事項은
文教部 및 關係要路에 建議하도록 하겠
읍니다.

金鍾燮(慶州)~國內 各 公共圖書館에서는
現在 分類表使用에 있어서 K.D.C와 D.
D.C를 각各 任意로 採擇하여 使用하고
있는데 이러한 離跌을 止揚하기 위하여
公共圖書館界만이라도 分類表使用의 一
元化를 期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張議長~從來에 公共圖書館界는 모두 K.
D.C를 使用해 왔었읍니다. 그러나 1957
年 以來 大學에 依하여 圖書館學教育이
實施되면서부터는 D.D.C를 中心으로 한
分類方法의 教育에만 一邊倒되어 왔기
때문에 漸次 D.D.C를 使用하는 傾向이
必然的으로 發生하게 되었읍니다.

事實上 韓國에 알맞게 改編되거나 批
判되지 않은채 一部分만 縫縫的으로 손
질하여 使用하고 있는만치 矛盾性이 없
다고도 할 수 없으며 反面에 K.D.C亦
是 廉은 不便과 矛盾性을 內包한채 裝
用되고 있는 터입니다. 한 나라의 公共
圖書館界에 있어서 分類表 사용을 달리
하는 두개 구룹의 圖書館이 있다는 것
은 全體的으로 보아 利用者의 立場에서
볼때 적지 아니한 不便을 주는 셈입니다.
그리하여 圖協에서는 5, 6年前부터
新標準分類表 制定에 着手한 以來 運運
不振하던 중 劃期的인 斷案을 내려 年

內로 完成할 豫定이라 합니다. 이마당에 있어서 慶州市立圖書館長께서 提議한 公共圖書館圖書分類表 採用의 一元化問題란 案件을 採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一同~滿場一致로 可決하다.

張議長~또 追加로 提案하실 案件이 없으십니까.

金鍾文(釜山)~藏書의 廢棄處分問題는 우리나라 財政法上 公有財產에 屬하는 까닭에 圖書館自體로서 廉棄할수 있는 形便이니 이 機會에 藏書廢棄規程準則 같은 것을 制定하도록 圖協에 建議하는 한편 이 建議가 圖協를 通하여 關係要路에도 建議함으로써 合法化의 길을 열어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張議長~釜山市立 圖書館長이 提議한 이 問題를 討議事項으로 採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一同~滿場一致로 可決하다.

李鴻求(鍾路)~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討議事項은 우리 自體로서 實踐하게 되는 對內的인 案件과 關係機關에 建議하게 되는 對外的인 案件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 이대로 實行하게 되는지요.

張議長~討議된 事項中에서 우리 自體가 解決할 것은 對內的으로 끝날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決議된 事項을 一括하여 圖協 또는 文教部 等 關係要路에 建議할 것입니다.

그 밖에 또 提議하실 案件은 없으십니까.

金鍾培(慶州)~司書職은 一般職과 分離해서 別定職化하는 것이理想的이라고 보는데 이 問題를 文教部보다는 內閣事務處에 建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金鍾文(釜山)~이 問題는 지금 이자리에서 論議한다는 것은 時期尚早한 感이 있으니 圖書館法이 通過된 後에 提起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李鴻求(鍾路)~圖書館法은 어제까지나 圖書館法이고 司書職의 別定職化 問題는 오히려 教育公務員 制度와 比準할만 한 所謂 社會教育 公務員과 같은 制度밑에서 다뤄야 할것 같으니 圖書館法과 서로 關聯시킬 必要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張議長~館種別 大會에서 建議되는 事項을 圖協에서 모두 採擇하는 것이 아니고 二次的으로 圖協理事會에서 再檢討한 然後에 採擇建議하게 될것이므로 일단 圖協當局에 反映시키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무슨 問題이면지 論議해 보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柳中秀(妙山)~市, 郡立圖書館에서 重視해야 할 곳은 農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農村 사람들은 大多數가 文化的인 福祉에 굽주린 사람이거나 文盲者들이니 만치 우리나라 圖書館 運動의 方向도 農村으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各郡에 널려있는 農村文庫나 小圖書館을 育成 發展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現在 多元的으로 展開되고 있는 農村文庫 運動을指導하기 위한 母體로서의 郡立圖書館 設置運動도 時急한 問題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여러 장래로 나눠져 제각각 뼈고 있는 文庫普及運動을 一元化하고 體系화할 母體의in 中央機構를 摸索하거나 確立하는 問題도 論議해 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張議長～이 문제는 司書職의 別定職化 問題의 討議와 關係가 되지 않는 문제이니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討議하기로 하겠습니다.

金鍾文(釜山)～妙山圖書館長이 말씀한 農村에서의 圖書館運動에 대한 現況을 좀 더 詳細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張議長～이야기가 떤 문제로 흐르는 것 같으나 司書職의 别定職 待遇問題를 討議案件으로 採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可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舉手해 주십시오.

一同一満場一致로 採擇하다.

張議長～그러면 妙山館長께서 말언하셨던 問題를 釜山館長 말씀대로 仔細히 說明해 주십시오.

柳中秀(妙山)～現在 뿐만 아니라 一年 사철 農村에서는 大端히 複雜하고 바쁜 生活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책을 읽어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難問題를 打開하기 위하여 再建青年會나 4H클럽等을 中心으로 한 青年層들에 의해 農事나 部落 일에 積極 獻身하고 있고 農村文庫를 비롯한 小圖書館을 土臺로 農民의 讀書運動에도 協助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郡小圖書施設 指導育成을 위한 母體가 될 만한 圖書館을 갖지 못한채 中央으로부터는 여러 系統을 通한 文庫設置運動만이 多元的으로 展開되어 農村部落으로 集中되고 있는 까닭에 精神을 차릴 수 없으며 따라서 上·下·左右로 一元化된 指導나 協調란 大端히 未弱한 實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圖書館인들도 보다 더 農村方面으로 視野를 둘려 農村으로부터 讀書啓蒙 運動을 일으키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합니

鄭甲桓(全北金堤郡)～圖書館法이 通過될 것을 마음으로나마 協助하고 祈願하는 쳐로서 農村文庫 實態를 公共圖書館 運動에多少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參考의 으로 말씀 드릴것 같으면 ① 再建文庫 600個所 ② 마을文庫 1,000個所 ③ 文教部에 依한 農村文庫統計가 昨 1962年末現在 22,732個所로 都合 24,322個所의 文庫가 있는 셈이며 全北道內에 만도 3,274個所의 文庫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部落이건 모두 原始의 으로 保管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개 農村 사람들은 먹고 살려는데만 정신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自然 文盲者나, 讀書와 因緣이 멀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므로 農村文庫를 設立하는 것만을 能事로 할 問題가 아니라 어떻게 利用시키느냐 하는 것이 그 첫째 問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讀書나 圖書館을 主題로 한 文化映畫를 巡回上映한다던지 해서 讀書運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張議長～妙山圖書館長이 말씀하신 農村文庫運動의 一元化같은 問題는 事實上 市郡 또는 道를 單位로 하는 公共圖書館에서 맡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現在 農村이나 地方의 群小圖書館의 指導育成에 母體가 될 道市郡立圖書館이 設置되지 않은 곳이 많고 設使 設置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自體의 維持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므로 必然的으로 모든 圖書館의 連結體인 圖協의 能動的인 協助를 바랄 수 밖에 없는 實情입니다.

이 問제는 일단 이 程度로 끌내고 可

及의이면 限定期內에 豫定을 마쳐야 하는 만치 適當한 線까지 問題를 討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追加討議案件의 採擇에 너무 많은 時間을 所要했읍니다. 그러면 妙山館長이 提案한 農村文庫運動體系의 一元化問題를 討議事項으로 採擇하는데 賛同하시는 분은 舉手해 주십시오.

一同～滿場一致로 찬성 採擇되다.

崔德成(晋州)～現職者들의 教育問題는 어떻겠습니까.

張議長～이 問題는 어제 저의 議題發表에 充分히 言及하였으므로 더 이상 討議하지 않는 것이 時間關係上 어렵겠습니다.

一同～贊成하다.

張議長～이것으로 追加討議事項의 採擇을 마치고 이제까지 우리가 採擇한 討議事項을 간추려 말씀 드린다면

- ① 公共圖書館 圖書分類表 採用의 一元化問題
- ② 藏書廢棄規程準則制定問題
- ③ 司書職의 別定職待遇問題
- ④ 農村文庫運動體系의 一元化問題等입니다.

그리면 討議事項의 個別의인 協議로 들어가겠습니다.

1. 公共圖書館의 運營과 奉仕問題

- 가) 閱覽時間과 定例休館의 調節
- 나) 特別手當의 支給問題

張議長～이 두 문제는 서로 聯關係이 있는 문제이므로 순서를 바꿔서 함께 討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앞서 참고로 몇 말씀 드린다면 實上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에

서는 써어비스라는 一念에만 一邊倒하여 利用者들의 무리한 要求에도 不拘하고 應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르는 圖書館員들의 犠牲의in 苦痛이 너무 나도 심한例가 많습니다.

그 卑近한 一例가 閱覽時間의 延長要求입니다. 保健·食事·時間外手當支給等保障없이 일하는 館員들에게 斷然 무리한 要求가 아닐 수 없으며, 크게 말하면 圖書館員들의 人權에 關聯되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參酌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閱覽時間과 定例休館에 대한 각 圖書館의 現況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釜山館長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金鍾文(釜山)～지금 말씀하신 것은 特別手當의 支給問題와 關聯이 깊은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現在 釜山市立圖書館은 새벽 6時부터 晚 9時까지 15時間 開館하고 있습니다. 從前(5·16)에는 上午 7時 30分부터 下午 5時까지 9時 30分間 開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釜山市長이 圖書館에 대한 關心이 大端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延長되었을 뿐 아니라 一週日에 한번 程度씩 整夜로 急襲해오기가 일수입니다. 閱覽票는 宿直員이 開館 30分前에 賣票를 합니다. 이런 關係로 人權을 너무 犠牲當하는 感이 있으니만큼 어떠한 準則이나 體系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一般行政職과 같이 勤務時間 to 定하되 延長勤務는 手當勤務制度에 依한 保障이 必要합니다. 交通部關係機關에서도 特勤手當이나 夜間手當을 支給하고 있으니 만큼 圖書館職員들의 特勤手當을 文敎部長官에게

建議해서 그 長官의 通牒에 依하여 實施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袁聖子(坡州)~저의 圖書館에서는 閲覽時間은 上午 8時부터 下午 11時까지 15時間을 開館하고 있습니다. 前에는 上午 8時부터 下午 5時까지 9時間 開館했었는데 閲覽者가 거의 學生들로서 主로 저녁 食事 뒤인 밤에 많이 찾았습니다. 때문에 時間을 延長했습니다.

崔昌均(南大門)~저의 圖書館의 閲覽時間은 아침 8時부터 저녁 10時까지입니다. 夜間 및 特勤手當이 없으므로 人員을 增員해야만 交代勤務를 할 수 있겠는데 現實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金湘基(平澤)~職員 2名으로서 上午 8時부터 下午 9時까지 13時間 開館하고 있습니다. 座席 50席에 하루 平均 200名程度의 閲覽者들이 利用하고 있습니다.

金禧澤(水原)~저의 도서관에서는 이번 여름에는 無休開館하였습니다. 6月 18日부터 8月 3日까지였습니다. 現在에는 새벽 4時부터 밤 10時까지 무려 18시간 開館하고 있습니다. 職員은 不過 5名인데 너무나 벅찬 業務를 遂行해 나가고 있습니다. 勤務基準에 關聯되기 때문에 職員들의 勤務는 勤務에 支障을 招來하지 않는 程度에서 適切히 調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던 고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金憲洙(大邱)~저의 도서관에서는 오전 8時부터 오후 7時까지 12시간 開館하고 있으나 土曜일은下午 1時까지 開館하고 있습니다. 職員은 14名이며 職員에게는 時間外 勤務手當을 支給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못주었으나 昨 1962年 8月부터 國立圖書館의 例를 들어 市長

과 打合하여 月 1,500원 정도의 手當을 支給하고 있습니다. 但 大邱에서는 우리 圖書館員들이 이 手當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從前에는 月曜日을 休日로 정했었으나 學校와의 連絡 및 모든 關係를 고려해서 金曜日을 休日로 定했습니다.

張璉性(國立)~交代勤務制를 午前과 午後로 나누어서 實施하고 있으며 午前 8時에 入館시키고 午後 8時에 閉館합니다. 土曜日과 日曜일은 5時까지 閲覽시키고 있으며 特勤手當도 土·日曜일에 限해서 주고 있습니다. 職員은 正規가 62名이고 臨時職이 6名입니다. 事務系列의 職員이 30名 가량이고 나머지는 모두 閲覽系統의 職員입니다. 1人당 特勤手當은 대략 50원 정도이고 日曜일은 150원 정도로써 月 約 800원 가량되며 輪番制로勤務하니까 平均 300~4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金憲洙(大邱)~原則的으로는 文教部가 이에 대한 規則의 準則을 만들어서 各道에 示達하여 實시토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現實은 그렇지 못한것이 유감입니다.

金鍾峻(慶州)~閲覽席은 120席이고 特勤手當을 支給할만한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아침 일찍 사환이 청소한 후 열람시간 約 30分前에 개관합니다. 열람時間은 一般公務員의 勤務時間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每月末日의 月例整理와 대청소를 위한 休館以外에는 年中 無休開館입니다. 職員의 休務는 1週일에 한번씩 交代制로 갖습니다. 즉 두 사람은 土曜日 두사람은 日曜일에 각각 休務합니다
宋光烈(全州)~午前 8時부터 午後 8時까

지 열람시키고 있습니다.豫算關係로
手當은 支給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昨
年에는 考試工夫하는 사람들의 請에 의
해서 午前 8時부터 午後 10時까지 開館
한 일도 있습니다.

張議長～外國에서 通用되고 있는 閲覽規
則을 보더라도 定例의인 整理日이나 祝
祭日 그리고 週例 休日等은 一般公務員
과 매한가지로 休務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圖書館의 方針, 利
用하는 住民들의 要求, 地域的 事情等
境遇에 따라서는 通例의인 公休日에도
開館할 수 있는 伸縮性과 特例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거기에는 充分한 保障의in 조
치가 取해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
라서 아무리 利用者들의 要求라해서 아
무런 대책없이 一方의으로 莫重한 應性
이 書職에만 强要된다는 것은 道理에
어긋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現實에 처하여 우리가 아무리 自進奉仕
한다 하더라도 每日 10時間奉仕하는 것
도 過한 疲勞인데 이를 넘어서 앞서 들
으신 各館의 實情과 같이 12~15時間
심지어 18시간까지 물인식한 上部命令
또는 利用者要求에 依해 延長勤務가 强
行되고 있음은 이 만저만 애처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金鍾埈(慶州)～閲覽時間의 標準은 午前 9
時부터 午後 9時까지로 定하는 것이 좋
겠습니다.

張議長～그려면 本件討議는 이 程度로 끝
내고 여러분의 意見을 綜合整理하여 다
음과 같이 決議 또는 建議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一同～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決議 및 建

議하기로 하다.

閲覽時間과 定例休館의 調節을 다음
과 같이 決議한다.

- ① 열람시간…上午 9時～下午 9時(12時
間制) 最長 13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定例休館日…國慶節・祝祭日・年始
3日
- ③ 定期休館日…週例 公休日(日曜 또는
月曜日) 月例整理定休(月 1일) 年末
整理定休(12月 30~31일)
- ④ 週例 公休日 및 半休日 開館 문제
館長의 裁量으로 開館할 수 있다.
但 ①項에 있어서 公務員 標準勤務時
間 8時間以外에 閲覽時間延長에 따르는
特別勤務와 ④項의 週例公休日 및 半休
日開館, 그리고 無休開館問題는 時間外
特勤 또는 休日特勤에 대한 法定手當의
支給 또는 職員의 增員에 依한 交代勤
務制를 實現할 수 있는 限 實施하기 어
려우므로 이에 대한 適切한 對策이 要
請된다.

特別手當支給問題를 다음과 같이 建
議한다.

閲覽時間은 12時間制로 延長하고 週
例公休日 半休日 開館에 對備하는 뒷받
침으로서 時間外 및 休日特別勤務에 對
한 法定手當의 支給을 文敎部와 內務部
에 建議한다.

金鍾埈(慶州)～閲覽時間에 대하여는 閲覽
者들이 市長이나 道內務局長 등에게 直
接 建議하여 公文으로서 이리이리 하라
고 下達되기 때문에 館自體로서는 이決
議를 遵行하기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張議長～아무리 훌륭한 理想이나, 利用者
의 正當한 要求, 그리고 原理에 立脚한
奉仕를 利用者에게 배풀려해도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나 與件이 具備되어 있지 않는다면 實現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利用者の要求가 無理하거나 不當함에도 不拘하고 利用者の要求라 해서 덮어놓고 밟아 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利用者와 館 사이에相互理解를 위한 適切한 P.R이 要望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圖書館運營의 原理에 어긋날 정도로 無理한 奉仕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奉仕는 결국에 있어真正한 意味의奉仕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므로 閱覽時間과 定例休館의 調節에 對한 우리의 正當한 意見은 關係要路에 하기 위해서도 各圖書館과 地方長官 그리고 政府關係長官에게 圖協會長名義로 建議하여 實現할 수 있도록 圖協에 要請하는 한편 特別手當의 支給問題 亦是 文教·內務兩長官에게 建議할 것을 圖協에 要望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一同一溝場一致로 可決하다.

나) 閱覽料 徵收制度의 撤廢

張議長～다음은 閱覽料 徵收制度의 撤廢에 대한 문제를 討議하겠습니다.

外國의 例를 자주 들어 未安합니다만 先進國에서는 일찍부터 閱覽料를 받지 않고 또한 自由로이 資料를 利用할 수 있는 無料自由公共圖書館으로서 出發시키고 發展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날에 와서는 閱覽料를 徵收하는 公共圖書館이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現在 閱覽料를 받고 있는 公共圖書館은 우리 나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後進性은 이런 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므로 이 段階에 있어서 우리는 이 문제를 内務部와 文教部長官에게 建議하여 하루 連히 撤廢되도록 해야겠습니다.

金湘基(平澤)～서희 圖書館은 閱覽料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金鍾文(釜山)～公共圖書館은 義務的인 初等教育施設에 對峙될 만치 거의 義務的인 社會教育施設이라 할 수 있으므로 閱覽料를撤廢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金鍾埈(慶州)～地方公共圖書館에서는 閱覽者들이 적은데다가 閱覽料를 받으면 오히려 열람자가 줄어드는 傾向을招來하므로 運營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館外帶出도勿論不振할 것입니다. 地方公共圖書館에서 열람료를 废止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積極的인奉仕與否가 左右된다고 봅니다. 1961年에 改正시킨 本圖書館의 條例 第4條를 보면 本館은 入館 및 利用料一切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圖書館에서도 實務를 擔當하고 있는 市參謀들만 잘 說得시킨다면 現行條例를 改正시켜 废止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옥룡(江華)～京畿道의 例를 볼 것 같으면 郡立圖書館 使用條例準則을 改正할 때는 道知事의 承認을 要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郡立圖書館에서는 道에直接建議하던지 또는 圖協에서 각知事 앞으로 建議하여 改正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張議長～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公共圖書館使用料는 外國의 例를 보더라도 받지 않는 것이 通例이므로 圖協으로 하여금 貫徹시키도록 力해 보겠습니다.

만약 뜻대로 잘 안될 경우에는 廣州市立圖書館의 경우와 같은 方法으로 實現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鍾文(釜山)～閱覽料 撤廢問題는 圖書館豫算을 獲得하는데 影響을 끼치는 바 적지 아니하므로 館長이 直接 建議하는 것은 좀 困難하다고 봅니다.

金憲洙(大邱)～各地方自治團體長의 裁量에 依하여 處理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張議長～대체로 閱覽料 徵收制度를 撤廢하는 問題와 이를 關係要路에 建議하는 것에 賛同하시는 意見이 많으신 것같은데 그러면 다음과 같이 建議案을 採擇하는 것이 어령겠습니까.

「오늘날 公共圖書館에서 利用者로부터 閱覽料를 徵收하고 있는 나라는 唯獨 우리나라 밖에 없는 實情이므로 이後進의 制度와 羞恥를 拂拭하도록 文教部와 内務部에 建議한다.」
一同～滿場一致로 찬동하다.

2. 利用者의 道德良識의 善導策

張議長～다음은 利用者의 道德良識의 善導策에 對해서 協議해 주십시오.

金鍾文(釜山)～저의 圖書館에서는 소리画을 通해서 男女가 分離하여 閱覽할 수 있도록 環境을 마련해 달라는 要望이 있어 釜山에서는 現在 女子閱覽室을 따로 두어 利用시키고 있습니다. 館內의 淨潔問題와 公共施設의 利用을 善導하는 方法으로서는 揭示板을 通하여 啓蒙하되 自身의 것을自身이 아끼는 마음으로 잘 利用해줄 것을 勸誘하고 있습니다.

金鍾埈(慶州)～저의 圖書館에서는 青年層

을 中心으로한 讀書會와 어린이를 中心으로한 鄉土學校等 組織 그리고 成人으로서 組織된 館友會를 通해서 利用者에 對한 善導策을 實施하고 있는데 結果의 으로 좋은 成果를 거두고 있읍니다.

崔昌均(南大門)～利用者의 善導는 施設의 向上에도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意味에서라도 저의 서울市에서는 建築費 5千萬원으로서 延建坪 2,500坪에 달하는 圖書館을 新築할 計劃이 完全하게 서 있읍니다.

張培性(國立)～저의 圖書館에서는 書廊에 閱覽者가 待機할 수 있는 待機所를 마련하였으나 館이나 주전자等이 많이 紛失되는 까닭에 防止할 길이 없어 不得已廢止하였읍니다.

張議長～仁川市立圖書館의 경우는 希望函을 利用해 보았으나 좋은 成果를 뜻 얻었읍니다. 그리하여 利用者들과의 座談會나 規則이나 公德의 不斷한 揭示 또는 訓話를 通하여 善導하고 있읍니다. 그밖의 方法으로서는 인터폰을 마련하여 入館後에 注意를 喚起시키는 方法이 있을 것이며 廣州市立의 경우와같이 成人們로 組織된 館友會를 通해서 P.R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揭示板에 館內案内圖를 비롯한 館則과 利用方法等을 恒時 揭示하여 善導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利用方法을 모르기 때문에 惹起되는 罷免을 미리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學校圖書館과 提携하여 協調를 염는 길과 클럽 및 團體 멤버들과의 P.R에 依하는 方法도 좋을 것입니다.

金憲洙(大邱)～巡視에 依하여 단속하는

方法과 閣覽者들과 자주 대화 기회를 마련하여 이런 문제를 指導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柳中秀(妙山)～함프렐과 같은 小冊子를 發刊하여 圖書館에 대한 모든 것을 理解시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張議長～저의 도서관에서는 明年를 利用者를 위한 小冊子를 發刊할 計劃입니다. 結局 善導策으로서는 施設의 向上에 依한 方法과 P.R을 通한 方法 即 希望函, 座談會, 講話, 圖書館 利用方法, 守則案內 및 揭示, 學校圖書館과의 連絡, 館友會, 讀書會, 圖書館 協議會, 圖協의 公共圖書館部會運營의 積極化, 大會等의 組織網을 利用하는 方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土台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決議하면 어떻겠습니까.

「利用者들의 圖書館 利用法의 未熟, 邊規守則精神과 圖書文化財를 비롯한 施設器材等 公物愛護思想 및 隣保公衛生觀念의 薄弱等 公道德과 良識이 不足한 것은 社會道義의 全般的인 墮落에서 오는 外的인 作用도 한 原因이 되겠지만 公共圖書館自體의 이에 대한 善導策의 缺如 또는 未及한에서 오는 內的인 作用도 主要原因이 되는 것임을 自覺하고 다음의 事項을 그 善導指針으로 삼아 각圖書館의 提携아래 一齊히 力盡할 것을 決議한다.

善導指針

1. 施設向上을 通한 善導
2. 圖書館에 대한 啓蒙案내資料의 發刊
3. 啓蒙善導를 위한 集會 또는 展示會等의 開催
4. 言論 放送機關을 通한 圖書館 P.R行

政의 強化

5. 圖書館 利用方法 및 館利用 守則의 揭示
6. 文化團體, 子壘活動體, 讀書會, 學校圖書館等의 組織網을 通한 善導
7. 運營奉仕方法의 改善을 위한 公共圖書館 協議體를 設置하고 자주 會合한다.」

一同～滿場一致로 通過되다.

3. 文教部, 市道 및 市郡機構內에 圖書館管理指導部署의 設置

張議長～다음엔 3項의 文教部, 市道 및 市郡機構內에 圖書館管理指導部署의 設置問題에 대해서 討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問題는 建議事項으로 다루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現實의으로 보아 道나 郡에 까지 圖書館, 課, 係를 둔다는 것은 不可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鍾文(釜山)～무릇 어찌한 國家의인 公益事業도 行政의인 뒷받침 없이는 그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나라의 圖書館事業이 不振하고 있는 原因도 亦是 強力한 行政의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圖書館法의 通過와 더부러 격어도 文教部의 社會教育課內에 圖書館係라도 設置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建議하고 싶습니다.

金憲洙(大邱)～最少限 文教部 社會教育課에 圖書館專門職으로서의 司書官 한 두 사람이라도 두었으면 합니다.

張議長～京畿道의 경우는 圖書館行政을 위한 部署가 당장 必要로 하게 되었음을니다. 現在로서는 教育局文化課의 所管

事項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圖書館에 대한 아무런 施策도, 힘도, 영향도 줄 수 없는 名目上의 所管部署밖에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영성한 組織에서 圖書館이 發展할 수 있으리라는 期待는 도저히 갖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文教部의 文藝局에 圖書館課를, 그리고 市道의 教育局에 亦是 圖書館課를 두도록 要望하되 이것이 不可能하면 文教部市道에 각각 司書官이라도 配置해 주도록 建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金鍾峻(慶州)~現在 地方의 文化課나 教育課로서는 圖書館에 대한 行政的인 施策이나 指標가 전연 없기 때문에 文教部에 依하여 全國的으로 一貫할 수 있는 圖書館行政體系의 確立와 施策의樹立이 아무런 切實히 要請됩니다.

김옥룡(江華)~明年度豫算編成前에 中央에서부터 地方當局 그리고 一線圖書館에 이르기까지 圖書館에 대한 一聯의 職制가 각각 確立되였으면 좋겠습니다. 張議長~5·16 以後에 地方長官會議에서 往往 福祉建設事業의 하나로서 公共圖書館 또는 文庫의 設置普及問題가 論議된바 있는 것 같습니다. 一例로 郡立圖書館과 農村文庫가 여기저기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京畿道가 제일 먼저 今年 들어 道內全郡 즉 19個郡에 郡立圖書館을 세웠습니다. 當初 이것은 3個年計劃事業으로 策定되었던 모양인데 을 1年으로서 完了하도록 앞당긴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趨勢는 繼續되어 全國一圓에 번져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既存圖書館은 勿論 이처럼 旗出되는 新設圖書館을 指導育成키 위

해서도 이 問題에 대한 中央當局의 積極的인 考慮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本件에 대한 建議案을 아래와 같이立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外國의 例와 같이 文教部와 市, 道에 圖書館課를 設置하고 不然이면 圖書館學을 履修한 專門職으로서 圖書館 擔當獎學官 또는 司書官을 配置하여 職을 文教部에 建議한다.」

一同~滿場一致로 通過되다.

4. 公共圖書館圖書分類表採用의 一元化問題

張議長~다음엔 追加案件인 ① 公共圖書館圖書分類表採用의 一元化問題를 討議해 주십시오. 그러나 本件은 案件採擇時에 論議된 바 많았고 또한 目下 韓國圖協에서 年內完成을目標로 韓國標準分類表를 制定中에 있으므로 더 이상 討議하는 것은 생략하고 圖協에 전의할 전의안 채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는지요.

一同~찬성하다.

張議長~그러면 전의안을 아래와 같이 成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現在 国내 各圖書館에서는 分類表採用에 있어서 各樣各色으로 統一을 期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此際에 우리 公共圖書館 分野만이라도 分類表採用을 一元化함으로써 混亂을 避하려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모든 圖書館이 繼續의 으로 一貫된 分類表를 使用할 수 있을 만한 完全한 分類表가 없으므로 施策을 세우는데 큰 困難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朴奉石氏에 依한 韓國十進分類表가 있으나 그것이 不完全, 不

便한 것이므로 圖協에서는 數年前부터
館界에 勸獎할만한 完全한 韓國十進分
類法制定에 着意하여 目下 年內完成을
目標로 制定作業을 進行시키고 있거니
와 이의 出刊要請의 緊迫性에 비추어
하루速히 이를 촉진함으로서 昨今에 族
出하는 大은 新生圖書館의 出發에도 도
움을 주도록 建議한다.」
一同～賛成하다.

5. 藏書廢棄規程準則制定問題

張議長～그 다음에는 追加案件 ② 藏書廢
棄規定準則 制定問題 亦是 討議를 省略
하고 바로 圖協에 대한 建議案採擇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一同～찬동하다.

張議長～그러면 建議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圖書館에 藏藏하고 있는 資料中에서
主로 圖書資料에 있어 亡失圖書와 時効
經過圖書等은 實事實上 空數字上의 圖書
이며 不必要한 圖書이므로 마땅히 適時
에 除籍處分함으로써 整理, 管理, 奉仕
上의 混亂을 避해야 할 것이다.

勿論 亡失圖書의 除籍處分에 대한 것
은 上部의 決裁를 얻어 行할수 있는 方
便이 아주 없는것은 아니나 失効圖書의
廢棄處分이 가장 問題가 된다.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國公立大學 또
는 國公立圖書館에 있어서의 藏書는 國
公有財產으로 登錄되어 永存의 原理에
따르고 있다. 흔히 決裁處分 以前의 藏
書狀態가 審計監查時에 財政法上의 抵
觸은 勿論 失効圖書의 除籍處分이란 좀
처럼 官의 認定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장에 財政法上의 拘碍를 받게된다

그러므로 圖書館管理論上의 廢棄處分의
原理가 法規化되어 公式的으로 通用될
수 있도록 文教部, 法制處等에 建議하
여 줄것을 圖協에 要望한다.
一同～찬성하다.

6. 司書職의 別定職 待遇問題

張議長～追加案件의 ③ 司書의 別定職 待
遇問題를 討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圖書館法案이 通過될 展望
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法律이 制定됨
으로써 由此圖書館事業이 保護育
成될 것이며 아무나 圖書館 일을 볼 수
있다고 誤認되었던 圖書館職은 비로소
司書職이란 이름을 廣 專門職으로서 身
分의 保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基準없이 운영되던 施
設, 藏書, 人員은 一定한 基準에 依하
여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司書職의 資
格要件도 規定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現職者는 學力에 따라 一定한 教育訓練
을 거쳐 繼續奉仕할 수 있도록 救濟策
이考慮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外國에서 司書職을 教育者
로서 待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認識되어야 할 것입니다. 現在
우리나라에서도 學校教育者는 教育公務
員法에 依하여 身分, 職階, 報酬等面에
서 別定職待遇에 一生을 安心하고 教
壇에 바칠 수 있도록 保障하고 있는 것
처럼 司書職도 社會教育者로서 生活問
題에 拘碍됨이 없이 民衆에게 獻身할수
있도록 保障되어야 할 것입니다.

司書職의 어떠한 保障과 優待를 위해
서는 반드시 別定職制度 밑에서만 可能
해질 것입니다. 法制定以後에도 現在와

같은 一般公務員職에 內包된다면 친동한 待遇는 없을 것입니다.

司書職이 一般職에서 分離되어야 한다는 理由로서는 職務內容이 學術的 技術的으로 高度의 專門性을 具有特殊業務라는 點에 있습니다.

李鴻求(鍾路)～司書職이 社會教育公務員인 까닭에 教育公務員法에 包含시킬 수 있다고 生覺할 수도 있는데 教育者라는 概念속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學校敎職者와 性質이 다른 司書職을 果然한 法律안에 达를 수 있을지가 疑問입니다.

張議長～저의로서도 疑問이 갑니다. 法律의로 잘 研究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完全하게 制度化하려면 社會教育法, 圖書館法 및 同施行令, 社會教育公務員法等이 갖추어 져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時間上, 討議는 이 程度로 終結하고 建議案採擇으로 들어가는것이 어떻겠습니까.

一同～ 좋습니다.

張議長～建議案을 읽어 드리겠아오니 可하다고 生覺하시면 舉手해 주십시오.

「圖書館의 業務가 專門的 또는 學術의 業務일 뿐아니라 複雜多岐한 技術의 殊業務인만큼 外國의 例와 같이 圖書館의 專門職인 司書職을 別定職으로 待遇할 것을 文敎部에 建議한다.」
一同～ 반장일치로 친동하다.

7. 農村文庫運動體系의 一元化問題

張議長～追加案件의 마지막 案件인 ④ 農村文庫運動體系의 一元化問題를 討議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칠래의 系統에 依하여 農村文庫를 設置하고 있으되 그 것

을 運營管理하고 指導, 利用사킬 수 있는 中心指導體가 없는 이 現象은 마치 밭에 곡식의 씨는 뿐만 아니라 施肥, 除草等 方法으로 가꾸지 않는것과 같읍니다 한 郡內에 數十數百의 文庫가 있다면 이의 指導管理에 對한 役割은 郡立圖書館이 擔當해야 하는데 郡單位의 圖書館이 없는 것이 最大的 憎입니다. 郡立圖書館을 中心으로 한 圖書館網의 形成이 가장 必要한 것입니다.

袁聖子(坡州)～坡州郡에서는 우리 도서관을 中心으로 19個所의 農村文庫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운영예산을 圖書館에서 負擔할 수 없어 放棄狀態에 있기 때문에 여러 칠래에 의한 文庫運動은 實事上 亂脈狀態에 빠져 있습니다.

金鍾埃及(廣州)～現在의 痛疾의인 事態로 보아 文庫運動이 指導體系의 單一化는 實事上 힘들것 같습니다. 現在 設置된 文庫는 앞으로 잘하면 圖書館의 分館으로 發展시킬 充分한 素地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圖書館이 關與하여 그 地域社會에서 자라고 있는 이 運動을 리이드하고 育成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充分한 研究課題가 되며 當面問題가 되겠습니다.

柳中秀(妙山)～무너져가는 文庫를 정말 잘 키워야 될것으로 봅니다.

張議長～우리가 나가서 指導해야 할것은當然한 이야기지만 公共圖書館이 멀리 떨어진 地方에서는 어떻게 育成指導할 것이냐가 問題입니다. 公共圖書館의 財政的 人的 條件이 용서치 않기 때문입니다.

文庫를 指導하는 指導者가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協議하고 또는 講座를 열

어서 指導育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系統에 依하여 展開되는 이 運動에 稼動되는 經費와 圖書와 人員을 公共圖書館에 맡겨서 設置運營케 하면 理想的이고 公共圖書館이 없는 地方에는 圖協에 文庫指導部를 두어 全國的으로 指導케 하며 政府에서는 文教部만이 이를 專管하여 圖協과 公共圖書館을 通해서 一元化된 運動을 벌이는 것이妥當할 것 같습니다.

中央에 이에 對한 建議案을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一同～賛同하다.

張議長～그려면 建議文案을 朗讀하겠읍니다. 可하면 學手해 주십시오.

「現在 우리나라에는 社會教育文庫, 마을文庫, 國民文庫, 農村文庫等 5,6種의 農村啓蒙文庫, 普及運動이 각機關에 依하여 亂立的으로 展開되고 있는바 이를 一元化하여 文教部가 主管하는 한편 公共圖書館으로 하여금 體系를 세워 普及指導할 수 있도록 文教部를 비롯한 關係要路에 建議한다.」

一同～滿場一致로 可決되다.

◎ 公共圖書館協議體의 設置

張議長～圖協規約에 公共圖書館部會에 對한 規定이 있으나 圖協의 財政問題로 死文化된 쟁機能을 全然 發揮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모인 이 機會에 이 문제를 끝으로 協議하고 헤어지는 것이 어쩔는지요 어떤 좋은 方法을 모색해서 이 部會를 運營해 보았으면 합니다. 公

共圖書館部會規程에 邊背되지 않는範圍內에서 部會運營의 摸索을 위한 研究體로서 公共圖書館協議體를 다음 圖協定總까지 暫定的으로 두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둔다면 몇 사람의 研究委員 程度로서 이 問題를 말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公共圖書館 協議體設置에 對한 決議文을 다음과같이 成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다 나은 來日의 公共圖書館의 運營과 奉仕問題를 相互協議하기 위하여 公共圖書館協議體를 가까운 將來에 設置키로 研究努力한다.」

一同～賛同하다.

金鍾文(釜山)～이번 大會의 準備委員 3名을 中心으로 2名을 더 追加해서 5名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指名은 議長에게 一任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一同～좋습니다.

張議長～그려면 釜山市立의 金鍾文館長님과 大邱市立의 金憲洙館長님을 指名하겠습니다.

一同～賛同하다.

張議長～以上으로 모든 討議를 終結하고 閉會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兩日間 좋은 討議를 頑摯하게 해주시고 또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信念과 使命에 對한 마음의 다짐을 불려 이르키신 圖協의 閉會長님의 閉會辭를 되새기시고 각자 돌아가시면 더욱 많은奮發이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安寧히 가십시오.

지난 9월에 있었든 館種別 全國圖書館大會의 關係記錄은 지면 관계로 다음 號에繼續해서 掲載 하겠습니다.